# 학생중심 현장중심 실천하는 시흥교육

#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 2022학년도

# 학교생활인권규정



# 🌠 송 운 중 학 교

http://songun.ms.kr

# - 목차-

Ι.	교내 및 교외 학생생활규정	1
п.	학생선도 규정	7
ш.	교육벌 및 차별금지 규정	14
IV.	두발, 교복 및 복장 규정	15
<b>V</b> .	학생자치회 선거관리 규정	21
VI.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24
VII.	학생자치회 학생안전도우미 운영 규정 —	31
WIII.	학급자치회장 및 학급자치부회장 임명 규정 -	33
IX.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35
Χ.	장애학생 인권규정	37

# I. 교내 및 교외 학생생활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송운중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등교)

- ① 학급조회 시간(09:05) 이후 입실 학생은 지각 처리한다.(현재 코로나 사항은 09:10)
- ② 등교 후부터 하교 시까지는 허가 없이 교외로 나가서는 안 된다.
- ③ 특별행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등교 시 교복을 착용해야한다.
- ④ 등교 시 학생증을 패용하고 등교하여야 한다.
- ⑤ 등교 시 학생 복장 · 두발 규정에 맞는 복장 및 두발상태이어야 한다.
- ⑥ 등교 시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 ⑦ 지정해준 교문(정문) 이외의 장소로는 등교할 수 없다.
- ⑧ 1학년에 한해 교복 분실 방지 등의 이유로 학생 스스로 교복에 명찰을 부착할 수 있다.

# 제 3조(자기주도학습)

- ① 교실에 난보다 일찍 입실한 학생은 실내를 깨끗하게 정리 정돈해주어야 한다
- ② 교실이 깨끗이 정리정돈 된 상태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자기주도 학습은 항상 정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교실에서는 옆 사람과의 큰소리로 대화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⑤ 학교에서 제공한 학습 자료는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개인별로 배부되어 있어야 한다.
- ⑥ 자기주도 학습은 학급자치회장 및 학습부장 또는 담임교사가 특별히 임무를 부여한 학생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 4조(수업준비 및 수업)

- ① 수업 종이 울리기 전에 입실하여 차분히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 ② 교실을 항상 정리 정돈하여 학습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 ③ 수업 시간의 제반 사항은 교과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④ 학급자치회장은 수업 시간의 변동을 사전에 확인하여 급원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 ⑤ 수업 중에는 수업에 관련 없는 잡담을 하는 등 수업에 방해되는 일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⑥ 수업 중에는 껌을 씹거나 과자류와 같은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 ⑦ 수업 중에는 핸드폰 및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⑧ 수업 중 발생한 쓰레기는 수업 후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 ⑨ 이동수업 또는 야외수업시간 시 학급자치회장은 교실 관리(잠금장치, 정리정돈)를 철 저히 하여 분실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⑩ 학급 내 분실물이 발생할 경우 담임이나 학생안전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제 5조(학습·시험 태도)

- ① 매일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등 학업에 정진해야 한다.
- ② 수업 중 의문 나는 점은 망설임 없이 질문하며 주어진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 ③ 바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
- ④ 학습에 필요한 도구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타인에게 빌려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⑤ 정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수업 중 이루어지는 시험 및 각종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 ⑥ 수업 중 제공된 각종 학습 자료는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 ⑦ 시험 중에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⑧ 시험은 최선을 다하여 응시해야 한다.
- ⑨ 시험은 학교에서 지정해준 장소와 지정해준 위치에서 응시해야 한다.
- ⑩ 시험 중에는 타인에게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① 시험 중에는 감독교사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 ② 시험 답안지에 지정된 표시 이외의 낙서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다.
- (3) 시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핸드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제 6조(복도 · 계단 통행)

- ① 복도와 계단 통행 시 정숙하게 보행해야 한다
- ② 복도와 계단 통행 시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 ③ 복도에서는 실내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④ 교사연구실 및 교장실에'회의 중'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회의실 주변에서는 정숙해야 한다.
- ⑤ 회의 중에는 부득이한 용무를 제외하고는 교무실 출입을 할 수 없다.

#### 제 7조(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

- ① 학교의 시설과 화경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각종 시설물을 사용해야 한다.
- ② 의도적인 교구 파손에 대해서는 파손시킨 학생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책걸상 및 기타 교구에 낙서를 하거나 칼등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③ 건물 주변에 위치한 화단에 들어가거나 식물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④ 교내의 모든 차량을 만지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 ⑤ 화장실 사용 시 질서를 지키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
- ⑥ 교내에서는 침을 뱉거나 껌을 씹지 말아야 한다.
- ⑦ 휴지나 오물은 반드시 분리하여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 ⑧ 선생님이나 외부 손님을 만났을 때에는 목례로 인사해야 한다.
- ⑨ 교내와 보도블록 설치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만 실내화를 신을 수 있다.
- ⑩ 점심은 규정된 장소와 시간 내에서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 ① 점심 식사는 실내의 지정된 자리에서 실시하고 실외에서는 할 수 없다.
- ① 배식 당번은 비닐장갑 및 위생 도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위생 청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 8조(지각 · 조퇴 · 외출 · 결과 및 결석)

-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부모를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 제출도 가능하다)
- ③ 신병 및 기타 사고로 장기 결석(2일 이상)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전에 직접 담임교사 나 학생생활안전부에 연락해야하고 질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 확 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무단으로 장기결석이나 가출음 하지 말아야 한다.
- ⑤ 질병과 관련된 결석·지각·조퇴·외출 및 결과를 한 학생은 해당 사유를 기입 한 결석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⑥ 등교 도중에 사고 발생으로 부득이 지각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고 즉 시 당임이나 학생생활안전부에 연락해야 한다.
- ⑦ 결석계 제출 없이 무단으로 결석해서는 안 된다.
- (8) 가정 사정으로 지각함 경우에는 학부모를 통해 사정에 담임선생님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⑨ 결과와 조퇴는 담임선생님께 허가를 얻어야 한다.(단, 가정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보호자의 연락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 ① 정기 수업시간에는 외출을 하지 못하며 휴식시간 중 외출도 담임 선생님께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귀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단, 점심시간에는 교문에서 학교안전지 킴이 선생님께 귀교를 보고하면 된다)
- ① 수업 시간에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과 지도 선생님에 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② 수업 중에는 교과 지도 교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교실을 이탈할 수 없다.

## 제 9조(교사 연구실 출입)

- ① 노크하여 허락을 얻은 후 들어와 옆으로 비켜서서 인사를 하고 용무가 있는 선생님 께 목례하고 자신의 용무를 말해야 한다.
- ② 선생님의 앞에서는 테이블을 잡거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씀드리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용무가 있는 학생과 더불어 집단으로 교무실을 출입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④ 교사들이 연구하는 사무실이므로 용무를 보는 동안 항상 정숙해야 한다.
- ⑤ 직원회의 중이나 고사기간 1주일 전부터 고사 종료일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는 교사연구실에 출입할 수 없다.
- ⑥ 교사연구실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물을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제 10조(교외 생활)

- ① 내 집부터 청결하게 유지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 ② 이웃 전체의 복리와 안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③ 지정된 횡단보도를 활용해야 하고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등 어떤 경우라도 교통법규를 주수해야 한다.
- ④ 차량 승·하차 시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반드시 차례 질서를 지켜야 한다.
- ⑤ 공공장소에서는 공중도덕을 지켜야하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⑥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였을 경우에는 습득 즉시 학생안전자치부에 습득신고를 해야 한다.
- ⑦ 귀가 하는 동안 학생 본연의 자세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흡연, 음주, 절도 등)
- ⑧ 남 · 여학생이 같이 있을 때에는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써, 학생의 신분에 반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⑨ 교복을 착용하고 학교 밖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실외화를 신어야 하며 실내화를 신고 이동하는 일이 없어야 하다.
- ⑩ 귀가 후 외출 시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 ① 귀가 후 상습적으로 선·후배 간 또는 동료 간에 집단을 이루어 배회하지 말아야 하다
- ② 선후배간 또는 동료 간, 타교학생 간에 금품 갈취나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③ 늦은 시간까지 오락실 및 PC방 등 유해 업소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 ①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 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 제 11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 ① 학급별 휴대전화 관리 도우미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② 휴대전화 관리 도우미를 선정하여 조회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학년부실 시 건장치가 되어있는 서랍장에 보관하고 종례 후 학생들에게 되돌려준다.
- ③ 휴대전화 관리 도우미에게는 절차에 의거 연간 10시간 이내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협박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확은 존중하고 보호하다
- ⑤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의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⑥ 타인과 자신의 정보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 ⑦ 일과 시간 중에 필요로 할 때 교과 교사 혹은 담임교사의 허가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⑧ 단, 추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자치회에서 휴대폰 수거와 관련한 사 항을 논의할 수 있다.

# 제 12조(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 여야 하다
-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계할 수 있다.
- ⑦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⑧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 제 13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0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규정의 틀 및 일부 내용을 개정 추가에 의해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Ⅱ. 학생선도 규정

# 제 1장 총 칙

- 제 1조(명칭) 이 규정은 '송운중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 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선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선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제 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 적 선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다.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 제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 5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제 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제 7조(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상담교사,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 사 교사 기타위원 등)
- 4. 간 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 참고사항

-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제 8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 9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제 10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 11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픽요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다

# 제 12조(간사)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하다.
-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 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장 학생의 선도

# 제 14조(선도사항)

- ① 학생 선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위반되어 교육 목적 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 나. 법령에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제 15조(짓계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 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하여 학생에게 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 16조(성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② 사회봉사

-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 인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정무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 4.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동의 개선 등을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가정학습을 부과하거나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한다.
- 5. 가정학습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 17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도기준			
항	내 <del>용</del>	교내 내 봉사	사희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사행성 오락을 한 학생(카드나 화투 등)	0	0	0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0	0	0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꽈손한 학생	0			
4	무단가출을 한 학생	0	0	0	
5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아 위법한 사실이 인정된 학생	0	0	0	0
6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0	0	0	0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0	0	0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0	0	0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0	0	0	0
10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0	0	0
11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0	0	0	0
12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0	0	0	0
13	흥기를 휴대한 학생	0	0	0	0
14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0	0	0	
1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0	0	0
16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0	0	0	0
17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0	0	0	0
18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0	0	0	
19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0			
20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21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22	징계 중 위 각 호의 규정을 재차 위반한 학생		0	0	0
23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써 학생의 신분 에 반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0	0	0	0

- 제 1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 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19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 20조(재심의 절차)

- ①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 제 21조(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 22조(심의절차 및 조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워 질의·응답
- 4. 의견첫취 및 질의 응답 : 담임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첫취 및 위원 질의 응답
-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제 23조(선도 내용의 통지)

-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 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다.
-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 24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 25조(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 ③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 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 부 칙

- 1. 제 1차 개정 (2002. 3. 19) :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0조, 제 31조에 의거하여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 2차 개정 (2004. 5. 20) : 본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에 없는 사항,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생활규정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 4. 제 3차 개정 (2005, 4, 31) : 본 규정은 200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5. 제 4차 개정 (2008. 3. 27) : 본 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6. 제 5차 개정 (2012. 4. 17) : 본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제 6차 개정 (2013. 8. 26) :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제 7차 개정 (2014. 09. 30) :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제 8차 개정 (2016, 06, 08) : 본 규정은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Ⅲ. 교육벌 및 차별금지 규정

# 제 1조(학교 내 체벌 금지)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체벌(회초리, 단체 기합 등) 뿐만이 아니라 언어폭력(인 간적인 모욕언어, 비속어,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도 금지된다.

# 제 2조(체벌 대체 지도방법)

- ①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②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③ 지벌(시 암송, 감상문 또는 독후감 쓰기, 나의 미래 설계하기 등 )
- ④ 덕벌(양로워 봉사, 화경보호 활동, 도서관 업무 보조, 장애인체험, 극기훈련 등)
- ⑤ 학급자치규정에 의한 지도

# 제 3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장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규정의 틀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Ⅳ. 두발, 교복 및 복장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송운중학교 학생들의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보편적 도덕 성에 근거한 것으로 자기 이해를 돕고 사회성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학생으로서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지도방향)

- ① 외형적 지도와 내용적 지도를 겸비해야 한다.
- 1. 개인의 체형에 맞도록 개별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 학년 수준에 맞아야 한다.
- 3. 모양보다 의복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② 자기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지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1. 학교 및 타인의 간섭 보다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 2. 와이셔츠나 브라우스는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 ③ 조화적이고 협동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정해야 한다.
- 1. 타인에게 단정하게 보여야 한다.
- 2. 자기 관리에 긍지를 가져야 한다.
- 3. 바른 몸가짐으로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
- ④ 학부모를 계도하고 가정생활에 협조해야 한다.
- 1. 학부모의 청소년 계도에 바른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
- 2. 청소년 문화에 대한 책임 있는 가정 지도를 도모해야 한다.
- 3. 내 자녀만을 생각하지 말고 학교 전체 및 동료 학생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 4. 가정과 학교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 3조(교복 규정)

① 교복 디자인 및 사양

1. 동복

품목	DESIGN SKETCH	ě	색상 및 소재(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JACKET) (공통)		디자인 소재 및 혼용율 단추 및 교표	1. 싱글 3버튼 테일러드 카라 2. 상/하 아우트 주머니 3. 윗 주머니에 교표 부착 4. 남색 체크무늬 1. (소모) 모60%, 폴리에스테르40%, ±10% 이내 2. (방모) 모50%, 폴리에스테르50%, ±10% 이내 단
하의 (PANTS) (공통)		 디자인 소재 및 혼용율	1. 기본 바지 디자인 2. 남색 체크 1. 모50%, 폴리에스테르50%, ±10% 이내
하의 (SKIRT) (여)		디자인 소재 및 혼용율	1. 앞 중앙 외주름 3개, 뒷주름 없음 2. 남색 체크무늬 1. 모50%, 폴리에스테르50%, ±10% 이내
조끼 (KNIT VEST) (공통)		다자인 소재 및 혼용율 단추 및 교표	1. 기본 브이넥 니트 2. 왼쪽 가슴 쪽에 교표 부착 3. 남색 1. 모50%, 아크릴50% 단 추
셔츠 (SHIRT) (공통)		디자인 소재 및 혼용율	1. 기본 긴팔 셔츠 2. 하늘색 1. 폴리에스테르70%, 레이온30%, ±5% 이내
넥타이 (NECK TIE) (공통)		디자인 소재 및 혼용율	1. 기본 타이 디자인(남색) 1. 모50%, 폴리에스테르50%, ±10% 이내

#### 2. 하복(남녀공용)

품목	DESIGN SKETCH	색상 및 소재(제작 시 유의사항)			
		디자인	1. 간편복 디자인 2. 윗 주머니에 교표 부착 3. 남색		
상의 (SHIRT)		소재 및 혼용율	1. 폴리에스테르 100%		
		단추 및 교표	단추 교표		
		디자인	1. 기본 바지 디자인 2. 남색		
하의 (PANTS)		소재 및 혼용율	1. 폴리에스테르 93%, 우레탄 7% 쿨스판		
		มอ	개인적인 사유로 반바지 착용이 곤란 한 학생은 학교와 협의하여 긴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 제 4조(교복 및 복장 등)

- ①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으로 구분하며 항상 단정하게 입는다.
- ②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동복 상의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류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가격의 의류는 지양한다.
- ④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⑤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⑥ 여학생의 경우 브라우스를 대신하여 남학생 Y셔츠로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다.
- ① 단, 추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자치회에서 교복 및 복장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 할 수 있다.

#### 제 5조(지도 내용)

## 복장

- 1. 허용사항 :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색상 및 모양에 한한다.
- (가) 동복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 교복과 같은 바지를 착용 할 수 있다.
- (나) 여학생 동복 치마의 경우 3주름, 맞주름(2줄) 치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 (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1학기 동안 교복을 구입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교복 구입으로 인한 심리적 및 경제적 압박감을 완화시켜 준다.
- (라) 3학년 2학기 전입생인 경우에는 기존 학교의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 (마) 동계기간에 한하여 정상적인 동복 착용 후에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 2 금지사항:

-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을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 · 교복의 교표는 소정의 위치에 부착하고, 명찰은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 · 교복 외에 생활복에도 호주머니형이나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 ② 두발: 학생의 두발 길이, 펌, 염색, 기타 머리 모양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③ 화장 및 용모
  - 1. 학생은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색조)화장을 하거나 가벼운 악세사리 등을 착용할 수 있다.
  - 2. 금지사항
  - : 문신, 피어싱, 인공손톱(팁)

# ③ 신발

- 1. 허용사항
- (가)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실내·외화
- (나) 실외화는 일반 운동화
- (다) 실내화는 실내용 신발
- (라) 부츠(방한용 부츠)
- 2. 금지사항
- (가) 굽 높은 구두 (굽이 높다는 것은 4cm 이상)
- (나) 4cm 이하라도 뒷 굽이 높고 굽이 달렸으며 앞 굽이 2cm이상인 것
- (다) 애나멜화, 샌들
- (라) 신사화, 숙녀화, 등산화, 고무신, 군화
- (마) 기타 학생으로서 품위 없다고 인정되는 것

- ④ 양말, 장신구, 휴대품, 모자
  - 1. 허용사항
  - (가) 허리띠(요대)는 수수한 것을 권장한다.
  - (나) 기타 학생 신분에 알맞은 것을 하도록 한다.
  - 2 금지사항
  - (가) 여학생 스타킹이 완전히 노출된 것과 망처럼 된 것
  - (나)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달랑거리는 귀걸이, 피어싱, 타투)
  - (다) 핸드백, 모자
  - (라)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것
- ⑤ 기타
  - 1. 복장에 따른 제반 규정은 규정에 의거하되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다.
  - 2.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생활인권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1. 본 규정은 200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06년 4 월 8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V. 학생자치회 선거관리 규정

## 제 1조(선거)

- ①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의 선거는 2학기말 12월 중에 실시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직선이 불가능한 아래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 1. 천재지변, 전시에 준 하는 사항
  - 2. 1차에 한하여 재등록 기간을 주어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 제 2조(선거 관리)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① 구성
    -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은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현 학생자치회장이 된다.
    - 2.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자는 학생자치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 ② 업무의 권한 :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제 3조(선거잌)

- ① 선거일은 2주전에 공고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며, 선거인 명부는 학급 명렬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 4조(후보자)

- ① 회장은 3학년 진급 예정자, 부회장은 3학년 진급 예정자 1명, 2학년 진급 예정자 1명으로 하되. 3학년 진급 예정자 부회장은 회장 입후보자 중 차점자로 한다.
- ② 후보자의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4개 학급 이상 30명 이상의 선거권자가 서명 날인한 후보자 학생 추천서 1통을 각각 첨부하여 등록한다.
- ③ 한 사람의 선거권자가 두 명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했을 경우에는 그 추천은 무효로 간주한다.
- ④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 ⑤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 위원장은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이 없을 때, 1차에 한하여 등록 마감일부터 4일간의 기간을 두어 재등록을 실시하여 선거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 때 입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

## 제 5조(후보자의 자격)

- ① 공고일 현재 본교의 6개월 이상 재학 중 인자
- ② 회장은 3학년 진급 예정자
- ③ 부회장은 회장 입후보자 및 2학년 진급예정자
- ④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현재 선도를 받지 아니한 자

# 제 6조(선거 운동)

- ① 기간 : 선거 운동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 전일까지 한다.
- ② 선거 관리업무 종사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선거 운동에 사용할 홍보물 원고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선전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학력, 공약, 선거 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벽보의 내용을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선전 벽보의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수정을 권고 할 수 있다.
- ⑥ 벽보의 용지 출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에서 일괄로 처리한다.(4 m)
- ⑦ 벽보의 관리는 기호 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다
- ⑧ 합동연설회는 투표일에 실시하며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단, 15분을 초과할 수 없고 1명의 찬조 연설자를 둘 수 있다.)
- ⑨ 금품 제공 등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무효로 한다.

# 제 7조(투표)

- ① 투표 방법: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지원 시 전자투표 가능)
- ② 투표소의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 개시 1시간 전까지 일정한 장소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치,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 ④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 ⑤ 투표소에는 각 후보자 1인씩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⑥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 제 8조(개표)

- ① 개표는 일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 ②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 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 ③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임석 하에 선거관리위원과 개표위원이 실시하며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 ④ 제 3항의 개표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학년 각 학급에서 1명을 선발한다.
- ⑤ 득표수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후 3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 ⑥ 무효표 : 다음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것
  - 3. 어느 난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 4.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것
  -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 부 칙

- 1.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0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VI.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이 회는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의 자질을 함약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명칭) 이 회는 '송운중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이하'이 회'라 칭한다)
- 제 3조(자치활동) 이 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 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정학 이상 의 선도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중지된다.

# 제 5조(권리, 의무)

- ① 이 회의 회원은 이 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이 회의 활동을 위하여 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은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 참석 및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 제 6조(지도 기구) 이 회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을 둔다.
- 제 7조(기구) 이 회는 대의원회와 각반 학급회를 둔다.
- 제 8조(효력 정지) 이 회의 의결 사항이 생활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제 2장 대의원회

# 제 9조(구성)

- ① 대의원회는 이 회의 상설 의결 기구로서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차장 및 각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학생자치회장은 대의원총회를 주관하고, 유고시 3학년 부회장이 이 회를 주관한다.
- ③ 학급자치회장 및 학급자치부회장은 각 학급에서 선출한다.
- ④ 대의원회의 운영상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가 인정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10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 ② 사업 계획 보고의 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학생자치회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 임명 동의권
  - ⑤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수렴 및 전달
  - ⑥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 11조(회의)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① 정기회는 매달 1회 한다.
  - ②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입을 때
  -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학생지도위원의 요구가 있음 때
  - ③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④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들 이 회의 소집에 대해 결정하여 진행하고 학생지도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소위원회는 3항의 의결 과정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 제 3장 운영위원회

- 제 1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
- 제 13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자치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③ 대의원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 ④ 대의원회의 위임 및 요구할 사항
-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제 14조(회의)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5조(조직)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기획부 : 연간 사업 계획 작성 및 기획, 문서 기록 보관, 회계 등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하 총괄적인 사항 및 바람직한 학교 전통 수립을 위한 제반 활동 사항
  - ② 학습부 : 학습 활동과 학예, 문예 활동, 송운관 운영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활동 사항
  - ③ 환경봉사부: 교내 환경 게시물의 배치, 교내 환경 미화, 쓰레기 분리수거, 각종 일손 돕기, 불우이우 및 학우 돕기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
  - ④ 학생안전부: 교내 안전 생활을 위한 캠페인 활동 및 대피 훈련, 아침마중 인사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건전한 교풍확립과 학교정화 등 민주 시민 자질 향상을 위 한 제반 활동 사항
  - ⑤ 문화체육부 : 회원의 문화생활 및 건강, 심신 단련, 체육대회 등 문화, 보건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⑥ 과학정보부 : 교내·외 정보관련 활동 사항 및 학교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
  - ⑦ 동아리부 : 자율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
  - ⑧ 홍보부 : 학생자치활동 및 학교 행사 홍보를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

# 제 4장 학생지도위원

- 제 16조(구성) 지도위원은 학생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학년부장, 체육보건부장 및 주무교사로 한다.
- 제 17조(기능) 학생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① 학생의 활동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②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③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학생자치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5장 선거

- 제 18조(선거)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 제 19조(자격) 송운중학교 재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단, 당해연도 3학년 재학생은 선거권만 가진다.)
- **제 20조(절차)**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부칙의 선거 세칙에 의한다. 선거의 모든 관리는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제 6장 임 워

## 제 21조(임원의 직능)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의원회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부의 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 22조(임워의 선출)

- ① 회장·부회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② 각부 부장 및 차장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제 23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품행이 바르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어야 한다.
- 제 24조(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학년도 3월 2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 제 25조(선출)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의 선출은 별도에 규정에 따른다.

# 제 7장 정족수와 규정의 개정

제 26조(정족수) 각급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 찬성을 얻어 학생지도위원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제 8장 학급자치회

- **제** 27조(목적) 학급 생활을 통하여 협동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8조(시간 배당)** 학급회의 시간 배당은 당해 학년도 학교교육과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월 1회 이상)
- 제 29조(활동 내용) 학급회 활동은 협의 활동과 위원 활동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혐의 확동
  - 1. 위원 조직과 활동 계획 수립
  - 2. 학급 생활 개선
  - 3. 생활 규율 준칙 마련
  - 4. 학급 환경 관리
  - 5. 학급의 학습, 보건 체육, 레크레이션, 보고회, 계절 행사, 교육 관계, 생활 반성, 봉사 활동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6. 학급 행사, 학년 행사 등에 대비하여 학급에서 사전에 할 일
  - 7. 학급 홈페이지 운영
  - ② 위원 활동
  - 1. 게시, 위생, 도서, 수집, 비품, 음료수, 미화, 청소, 안전, 질서, 생활 주변, 봉사, 학급 홈페이지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활동
  - 2. 교과 학습. 체육회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활동
  - 3. 수시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 **제 30조(조직)** 학급회 조직은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 기획부장, 학습부장, 바른 생활부장, 환경봉사부장, 문화체육부장, 과학정보부장, 동아리부장을 둔다.
- 제 31조(임무) 학급의 지도 조직에 따른 학급자치회장, 부회장 및 각 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학급자치회장 : 학급회 의장, 학급을 통솔, 출석 파악, 교과 시간 및 집회 시 인원보고, 담임교사의 지도 사항 전달, 교실 환경 구성, 학습 분위기 조성, 학생자치회대의 위 등의 업무에 관한 임
- ② 학급자치회 부회장 : 학급자치회장을 보좌하고 학급자치회장 유고시 학급자치회장 을 대행하며 학생자치회 대의원 등의 업무에 관한 일
- ③ 기획부장: 기획 및 학급회 진행, 회계, 섭외, 기타 총무에 관한 일
- ④ 학습부장 : 수업 시간 학습 준비, 교과서, 노트 지참 상황 과악, 자율 학습 과제물 확인, 작품 수집, 학습 간행물 관리, 기타 학습에 관한 일
- ⑤ 환경봉사부장 : 실·내외 청소, 학급 내외의 미화 활동, 반딧불 활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연보호 활동, 수목 관리 및 게시물 보수 등 환경 보존과 불우 이웃 및 학우 돕기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일
- ⑥ 바른생활부장 : 학급의 학생 질서 및 실내 정숙에 관한 일
- ⑦ 문화체육부장 : 학급 문화체육 활동, 1인 1운동, 허약자 파악, 학급 오락, 건전 가요 부르기, 여가 선용 및 기타 문화체육 활동에 관한 일
- ⑧ 과학정보부장 : 학급 홈페이지 운영과 과학 관련된 활동에 관한 일
- ⑨ 동아리부장 : 자율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일
- 제 32조(회의 진행 순서) 학급 회의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고 회의 내용은 학급일지에 기록한다.
  - ① 출석 점검(기획 부장)
  - ② 개회(학급자치부회장) 및 개회 선언(학급자치회장)
  - ③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부회장)
  - ④ 의장 인사 및 전주 반성(회장)
- ⑤ 회의 주제 제시(학급자치회장)
- ⑥ 주제 토의
- ⑦ 기타 토의
- ⑧ 건의 및 희망 사항
- ⑨ 담임 교사 지도 조언
- ⑩ 교가 제창
- ① 폐회(회장)
- 제 33조(정족수 및 의결) 학급회의 의사 정족수 및 표결, 정족수는 단순 과반수로 하고 제반 토의 안건은 거수 표결에 의해 의결한다.(단, 위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제 34조(학급회 진행상 유의점)
  - ① 토의 문제에 대해 공동 의식을 갖는다.
- ② 토의 의제는 학급회 개최 전일 종례 시간에 사전 발표한다.
- ③ 토의 의제는 사전에 지도 교사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다.

- 1. 본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일부 수정하여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일부 수정하여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적 통례에 준하되학생지도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 5. 선거관리업무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6. 본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학생자치회 학생안전부 운영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생활의 기강을 확립함에 있어 자치적 역할을 담당할 학생 의 임명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조직)

- ① 학생자치회 학생안전부원은 1.2학년 담임교사가 학급당 3명 이내로 추천한다.
- ② 각 학급에서 추천한 자 중 학생지도위원과 대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적임자를 제외하고 전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학생지도위원의 재추천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제 3조(자격) 안전부에 임명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야 한다.
  - ① 본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② 학생안전부 모집 공고일 현재 선도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③ 급우 간에 신임이 있으며 지도력이 있는 자

#### 제 4조(임명 절차)

- ①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가 임명한다.
- ② 학생지도위원과 대의원회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3조의 자격 조건이 구비되었는지 심사한다.
- 제 5조(임기) 안전부의 임기는 해당 학년으로 한다.
- 제 6조(임명취소) 안전부원으로 추천 임명된 후라도 부적격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안전부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7조(임무)

- ① 등하교 시간, 점심시간 중 교문, 현관, 복도, 교내에서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한다.
- ② 안전 생활을 위한 캠페인 활동, 안전 대피 훈련, 아침마중 인사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활동, 안전 교내 순회 등의 교내 캠페인 활동을 주도한다.
- ③ 활동 상황음 기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한다.

- 제 8조(자격상실) 학생안전부원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선도대상자가 되었음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 9조(활동 보상)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으로 활동한 학생안전부원은 절차에 의거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학교장 표창과 10시간 이내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 1. 학교장은 안전부원의 활동에 별도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흉장이나 완장기타의 표시를 패용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2.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0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Ⅷ. 학급자치회장 및 학급자치회 부회장 임명 규정

-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장·부회장을 공정하게 선출, 임명하고 임명되 학급자치회장·부회장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정수) 각 학급에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을 각 1명씩 둔다.
- 제 3조(후보 자격) 각 학급 지치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① 송운중학교에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 ② 기타 급우 간에 신임이 두터우며 통솔력이 있는 자
  - ③ 정·부회장 후보 등록 기간 중 현재 선도를 받지 아니한 자

# 제 4조(임명 절차 및 선거 방법)

- ① 학급 학급자치회장·부회장은 학급회의 직접선거와 담임교사의 제청에 따라 송운중학 교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하고 당선증을 발급한다.
- ② 담임교사가 정·부회장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선거 방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 2. 재적 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최고 득표자를 학급자치회장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 3 학생자치부회장은 후보자 중 차점자로 하다
- 4. 부득이한 사유로 정·부회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주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5조(임기) 정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 기간으로 한다.

# 제 6조(교체)

- ① 학급자치회장·부회장에 선출된 자가 제 3조 각 호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적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급 담임교사의 제청으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 할 수 있다.
- ② 전 항에 의하여 정부회장이 임명될 때에도 제 4조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보궐 선 거를 하여야 한다. 단, 학급자치회장이 직위해제 되었을 때, 학급자치부회장이 입 후보하기 위해서는 사퇴 후 입후보하여야 한다.
- ③ 보궐선거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학급자치회장·부회장에 선출된 자가 임명된 기간 동안 학생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선 도를 받은 경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제 7조(학급자치회장의 직위) 학급자치회장은 그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회장 및 학생자치회 대의원을 겪임한다.
- 제 8조(학급자치회장의 의무)
  - ① 선생님의 명을 학급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급 학생들의 의사를 선생님께 건의 전달한다.
  - ② 선생님을 도와 학급 학생을 통솔한다.
  - ③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 풍토를 확립한다.
  - ④ 학급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 제 9**조(학생자치부회장의 지위와 임무)** 학생자치부회장은 학급자치회장을 도우며 학급 자치회장의 유고시 학급자치회장을 대리한다.
- 제 10조(규정의 내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실무협의회 학생지도위원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0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다
- 5.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일부 내용 개정에 의해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IX.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선도, 선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제 4조(위위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다
-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보호 자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보호자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제 5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 6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위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학교장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 7조(검토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8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 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 9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 제 10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제** 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 12조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 ②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10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X. 장애학생 인권규정

#### 제 1조(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주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다. 학교는 장애학생을 인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 제 2조(근거)

-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 1장, 제 1조에서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 2. 제 2장, 제 32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괴롭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3. 이를 어길시 제 6장, 제 49조에서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 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제 3조(차별행위)

- 1.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②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 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⑤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로부 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 ⑥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⑦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을 가하는 경우
- 2.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하다
- ①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제 4조(차별판단)

- 1.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2.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 5조(교육)

- 1.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이 당해 교육 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9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6조(괴롭힘 등의 금지)

- 1.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 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 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3.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가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